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2001. 5.14 법률 6474호로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 개정되었기에 인용 조문의 개정과 결손처분 시 승인사항 등 관련 조문을 정비코자 함.

2. 주요골자

- 조례 제명 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함.
- 관계 법령인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인용 법령명 정비(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4조제1항)
- 회계 관계 공무원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의 기금운용관을 기금담당관으로 함.
(안 제4조제1항, 안 제5조, 안 제6조제1항·3항, 안 제7조제1항)
-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함.(안 제7조제1항)
- 결손처분 시 승인(심의) 사항 및 법령 개정 부분 정지.(안 제8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정안은 의료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며, 법률 제6474호(2001. 5. 24)로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관련법인 의료보호법(제21조)을 의료급여법(제26조)으로 인용 법령명을 정비(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4조제1항)하며, 회계 관계 공무원 책임에(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 관하여 경리관, 징수관에 대한 규정의 기금운용관을 기금담당관으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안 제7조제1항), 또한 결손처분 시 승인(심의) 사항 및 법령 개정 부분을 정비(안 제8조)하는 개정안으로써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개정안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됨.